2.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가. 제안이유

- 1) 휴학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업의 기회를 주고자 함.
- 2) 사회봉사활동을 졸업의 필수조건으로 두어 사회적 소양을 다하고자 함.
- 3) 정당한 사유 없이 미 복학한 학생에 대한 제적 근거 마련하고자 함.
- 4) 유아교육과 전공심화과정 신설에 따른 규정개정
- 5) NCS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성적평가방법 변경

나. 주요내용

- 1) 휴학을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.
- 2) 사회봉사 과목을 이수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함.
- 3) 정당한 사유 없이 미 복학 학생에 대한 제적 처리할 수 있도록 함.
- 4) 유아교육과 전공심화과정 신설에 따른 규정개정
- 5) NCS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성적평가방법 변경

다. 주요토의과제

라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 :

2) 예산조치 :

3) 합 의:

4)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【별첨】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		현		행					개 정	<u> </u>	(안)			
Ţ	제5조의2(전공심화과정 설치) (생략)							제5조의2(전공심화과정 설치) 현행과 같음						
	모집단위	대계열분류	입	학정원		수업년한		모집단위	대계열분류		입학정	원	수업년한	
	(계열학과명)	네게౽군ㅠ	주	0‡	계			(계열학과명)	네게౽正ㅠ	주	0‡	계	구립인인	
	사회복지학과	인문사회		20	20	2		사회복지학과	인문사회		20	20	2	
	물리치료학과	자연과학		40	40	1		물리치료학과	자연과학		40	40	1	
	간호학과	자연과학		20	20	1		간호학과	자연과학		20	20	1	
	치위생학과	자연과학		20	20	1		치위생학과	자연과학		20	20	1	
	합	<u>계</u>		<u>100</u>	<u>100</u>			<u>유아교육학과</u>	<u>인문사회</u>		<u>20</u>	<u>20</u>	<u>1</u>	
								한미	<u>계</u>		<u>120</u>	<u>120</u>		
	제28조(휴학) ① (생략) ②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<u>있으나,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</u> 병역의무,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													
	제46조(졸업) ① ~ ④ (생략) < 신 설 >							제46조(졸업) ① ~ ④ 현행과 같음 ⑤ 사회봉사는 PASS제로 30시간 이수하여 2학점을 인정하고,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.						

지 31조(제적) 1 ~ 3 (생략) 4.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한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지 41조(시험)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. 다만, 학기 중 중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② ~ ③ (생략) 지 4. 구~~~ 사유 없이 복학을 하지 않거나, ~~~~~ 학기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과목에 따라 중간시험 및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② ~ ③ 현행과 같음

부 칙

<u> < 신 설 ></u>

[별표 2] 학사과정 학위종별

학위종별	해당학과명
행정학사	사회복지학과
보건학사	물리치료학과
간호학사	간호학과
치위생학사	치위생학과

부 칙

제1조(시행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학과 신설) ① 2015학년도부터 유아교육학과(전공심화 과정)를 신설한다.

[별표 2] 학사과정 학위종별

학위종별	해당학과명
행정학사	사회복지학과
보건학사	물리치료학과
간호학사	간호학과
치위생학사	치위생학과
<u>유아교육학사</u>	<u>유아교육학과</u>